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194

발의연월일: 2021. 11. 9.

발 의 자:이병훈·김승원·김영배

김영호 • 박 정 • 양향자

유정주 • 이상헌 • 이형석

임오경 · 홍성국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두고,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 행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(총 68명) 의 전승공예품 전체 판매액이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전승공예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전통기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,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,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) ① 정부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승공예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승공예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43조의2(전승공예품의 우선구 |
| | 매 등) ① 정부는 전통기술의 |
| |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 |
| | 요 창출을 위하여 전승공예품 |
| | 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 |
| | 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|
| | <u>한다.</u> |
| | ②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|
| |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|
| | 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 |
| | 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|
| | 한다)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|
| | 하는 바에 따라 전승공예품의 |
| |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|
| |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|
| | 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 |
| |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|
| | 전승공예품 구매목표를 제시하 |
| | <u> 여야 한다.</u> |
| |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|
| |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|
| |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대통령 |
| |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승 |

공예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